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주호 (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대학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,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임용권자가 검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,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지원 서류에 학위 및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임용취소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「교육공무원법」이 개정(법률 제20783호, 2025.3.18. 공포, 9.19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대학교원의 신규채용 공고 방법으로 해석상 모호한 부분을 해소하여
일간신문도 선택적 공고 대상임을 명확화(안 제4조의3제5항 개정)
- 나. 서류 등의 검증 시기, 제출 양식, 검증 기준 등을 대학이 자율적으로
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학교원의 신규채용과 관련된 서류
검증의 토대 마련(안 제4조의3제7항 신설)
- 다. 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기준을 구체화(안 제
4조의5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0.0. ~ 0.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

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3제5항 중 “일간신문·관보”를 “일간신문, 관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서류 등의 검증은 이 영 제3항 각 호의 단계와 병합하여 실시하거나 별도로 실시할 수 있으며, 대학의 장은 서류 등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서류의 제출 양식, 요건 및 검증기준 등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제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5(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 법 제11조의5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「고등교육법」 제16조 및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 자격에 관한 사항
2. 그 밖에 대학 교원 임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3(대학교원의 신규채용)	제4조의3(대학교원의 신규채용)
① ~ ④ (생 략)	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대학의 장은 대학교원을 신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마감 일 15일 이상으로 학칙에서 정 하는 기간 전까지 채용분야·채 용인원·지원자격·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<u>일간신문·관보</u> 또는 정보통신망 그밖의 효과적 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.	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일간신문, 관보</u> ----- -----.
⑥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⑦ <u>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서류 등의 검증은 이 영 제3항 각 호의 단계와 병합하여 실시 하거나 별도로 실시할 수 있으며, 대학의 장은 서류 등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서류의 제출 양식, 요건 및 검증 기준 등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.</u>

<신 설>

제4조의5(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
위자에 대한 조치) 법 제11조의
5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
요한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
사항을 말한다.

1. 「고등교육법」 제16조 및 「대
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
규정」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
자격에 관한 사항
2. 그 밖에 대학 교원 임용에 중
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
인정되는 사항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938